

춘천지방법원 2018. 7. 31 선고 2017가단505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영농조합법인

변론 종결 2018. 7. 3

판결 선고 2018. 7. 31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강원 화천군 D 창고용지 376㎡ 지상 조립식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농산물간이집하장 170.5㎡를
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,716,705원과 2018. 3. 1.부터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,245원의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, 2호증, 감정인 E의 임료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00. 12. 21. 강원 화천군 D 창고용지 37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는 1997. 11. 28.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조립식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농산물간이집하장 170.5㎡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, 2000. 12. 21.부터 2018. 2. 28.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간임료는 합계 2,716,705원이고, 2018. 3. 1.부터의 월 임료는 23,24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·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0. 12. 21.부터 2018. 2. 28.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,716,705원과 2018. 3. 1.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월 23,2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유재현